

2020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모집요강

학부유학생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일본대학에서 학부유학생으로 수학할 외국인 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아래

1. 학부유학생의 정의

대학 학부 과정에 재학하는 자 및 이에 앞서 일본어 등 예비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모집 분야

학부유학생 전형에 신청하는 자는 「문과계」 또는 「이과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 표에서 「계열」 및 「전공 분야」를 선택할 것. 제 3희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1) 문과계

계열	전공 분야
문과계 A	1. 법학 2. 정치학 3. 교육학 4. 사회학, 5. 문학 6. 사학 7. 일본어학 8. 기타(문과계 B의 1.과 2.를 제외함)
문과계 B	1. 경제학 2. 경영학

(2) 이과계

계열	전공 분야
이과계 A	이학계 (1. 수학 2. 물리 3. 화학)
	전자전기계 (4. 전자공학 5. 전기공학 6. 정보공학)
	기계계 (7. 기계공학 8. 조선학)
	토목건축계 (9. 토목공학 10. 건축공학 11. 환경공학)
	화학계 (12. 응용화학 13. 화학공학 14. 공업화학 15. 섬유공학)
기타 (16. 금속공학 17. 광산학 18. 상선학 19. 생물공학)	
이과계 B	농학계 (1. 농학 2. 농예화학 3. 농업공학 4. 축산학 5. 수의학 6. 임학 7. 식품학 8. 수산학)
	보건학계 (9. 약학 10. 보건학 11. 간호학)
	이학계 (12. 생물학)
이과계 C	1. 의학 2. 치학

(주) 이과계를 선택하는 사람이 여러 전공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 계열(이과계 A, 이과계 B와 이과계 C)전공 분야에서 최대 3 분야까지 선택하여 기입할 것. 그러나 이과계 C를 제1희망으로 희망하는 자는 전공이 2가지 분야로 한정되기 때문에 제2희망으로 이과계 B또는 C 중에서 선택하거나 제 3희망으로 이과계 B에서 선택할 수 있다.

3. 학부유학생의 수학 내용

(1) 예비교육

- ① 최초 1년간은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예비교육기관(상기 2.(1)의 문과계를 희망하는 유학생은 도쿄외국어대학을 상기 2.(2)의 이과계를 희망하는 유학생은 오사카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입학을 위한 집중적 일본어교육, 기타 예비교육을 받는다. 수업내용은 일본어 교육을 중심으로 일본 사정, 수학, 영어 및 문과계는 사회, 이과계는 물리·화학·생물 등이다.
- ② 예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 시험에 합격 후, 해당 대학에 입학한다. 또한, 예비교육을 수료할 수 없는 경우 대학에 입학할 수 없고, 그 시점에서 장학금은 중지되고 귀국하게 된다. 이 경우의 귀국 여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2) 대학에서의 수학

- ① 입학하는 대학은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이하 「재외공관」 이라 함)에서 제1차 선고의 필기시험결과, 일본 입국 후 예비교육기관의 성적, 유학생의 전공, 대학의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부과학성이 예비교육기관 및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결정.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② 학년은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난다.
- ③ 수업은 모두 일본어로 진행된다.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으로 직접배치의 경우를 제외한다.)
- ④ 입학한 대학에 소정 기간 이상 재적하고, 해당 대학이 정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그 전공 분야에

따라 학사 학위가 주어진다.

(3) 전공 분야의 변경 및 이수한 과목의 취급

- ① 예비교육 및 대학에서 수학함에 있어서 계열(문과계 A,B 및 이과계 A,B,C)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예비교육 및 대학에서 수학 도중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예비교육기관 및 대학에서 정한 필수과목은 학생들이 이미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이수해야만 한다.

4. 직접배치

- (1) 상당한 일본어능력을 가진 자는 예비교육을 거치지 않고 대학에 직접입학을 희망할 수 있다. 또한, 입학 시점에 일본어 능력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학의 학부는 예비교육을 거치지 않고 학생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학부에 직접 입학하는 것도 가능하다(이하 「직접배치」라 함). 이 경우 대학으로부터 봄학기 입학(2020년 4월 일본에 입국하여 학기 시작) 또는 가을학기 입학(2020년 9월 또는 10월 일본에 입국하여 학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 (2) 직접배치 희망자의 배치대학에 대해서는 제2차 선고에서 문부과학성이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때 신청자의 과거 학업성적(고등학교 성적 등) 및 입학 후 필요한 어학능력이 갖춰져 있는지(일본어능력시험(JLPT)레벨 또는 영어 검정시험 점수 등)에 대해 심사한다. 대학에 따라 면접시험 등이 있을 수 있다.
- (3) 직접배치 협의 기간은 제2차 선고 이후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배치 협의 결과 및 결정 시기에 따라 배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대학에 직접배치, 예비교육기간에 배치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① 배치협의기간 중 해당 대학이 수용 가능하다고 한 경우 : 대학에 직접배치
 - ② 배치협의기간 중 해당 대학이 수용 불가라고 한 경우 : 예비교육기관으로 배치
 - ③ 배치협의기간 종료 후, 해당 대학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한 경우 : 대학에 직접배치
 - ④ 배치협의기간 종료 후, 해당 대학에서 수용 불가라고 한 경우 : 채용되지 않음

5.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 수학하는 것을 통해 일본과 자국과의 가교가 되고, 양국 나아가 세계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 (1) 국적 : 일본정부와 국교 관계가 있는 나라의 국적 소지자일 것. 신청 시 일본 국적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 시 일본 이외에 생활거점을 둔 일본국적 소지 이중 국적자에 한해 일본 입국 전까지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고 일본 국적을 이탈할 예정자는 대상으로 한다. 제1차 선고는 응모자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재외공관에서 실시한다.
- (2) 연령 : 원칙적으로 1995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 하기 (3)의 학력조건 ③에 해당하는 자는 일본 대학입학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단, 국적 국의 제도·사정(병역의무·전란에 의한 교육기회의 상실 등)에 의해 자격연령 시기에 응모하지 못한 자로 문부과학성이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인적인 사정(경제상황, 가족사정, 건강상태, 대학 또는 근무처의 사정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 (3) 학력 :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한다. 단, 직접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①, ③ 또는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외국(대한민국 포함)에서 학교 교육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 (2020년 3월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예정이 확실한 자도 포함)
 - ② 외국(대한민국 포함)에서 일본의 고등학교에 대응하는 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 (2020년 3월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예정이 확실한 자도 포함)
 - ③ 외국(대한민국 포함)에서 12년 과정 수료에 상당하는 학력인정시험에 합격한 자. (2020년 3월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예정이 확실한 자도 포함)
 - ④ 이 외에 신청 시점에서 일본의 대학 입학 자격을 가진 자.
- (4) 일본어 등 :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일본 입국 후에도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 이해하려는 의욕이 있을 것. 또한, 일본에서 연구에 종사하고 생활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5) 건강 : 소정의 건강진단서 양식에 따라, 일본 유학에 대해 심신 모두 지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 (6) 출발 시기 : 원칙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일본 입국이 가능한 자. 거주지로부터의 출발도 4월 1일이후로 한다. 직접배치에 의해 가을 학기 입학이 되는 경우에는 수용 대학이 지정한 같은 해의 각 학기 개시일로부터 전후 2주 중 수용 대학이 지정한 날에 입국이 가능한 자.
- (7) 비자 취득 : 일본 입국 전에 국적국 소재 재외공관에서 「유학」 비자를 새롭게 취득하고, 취득한 「유학」 재류자격으로 입국할 것. 따라서 이미 다른 재류자격(「영주자」, 「정주자」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학」으로 변경한 후에 신규로 입국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국비외국인유학생 신분 종료 후에 다시 「영주자」,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신청해도 당연하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 신규 「유학」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했을 경우, 장학금 지급 중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8) 대상 외 : 다음 항목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자는 대상 외로 한다. 채용 이후에도 판명이 될 경우 사퇴할 것.
- ① 일본 입국 시 또는 장학금 지급기간에 현역 군인 또는 군속인 자.
 - ② 문부과학성 또는 수용 대학이 지정한 기일까지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자.
 - ③ 과거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일본 입국 후 사퇴한 자도 포함). 단, 문부과학성 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Monbukagakusho Honors Scholarship for Privately-Financed International Students)는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제도 중 다른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한 자. 이는 2019년도 장학금 지급 개시 프로그램 중 채용결과가 신청자에게 아직 통지되지 않았거나, 2020년도 장학금 지급개시 프로그램도 해당된다.
 - ⑤ 신청 시 이미 재류자격 「유학」으로 일본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 그리고 자국에 있어서 본 장학금의 신청 시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전까지 사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일본 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자. 다만, 장학금 지급기간 개시 전에 수료해 귀국할 것이 신청 시 확실하고, 재류자격 「유학」으로 새롭게 취득 후 일본으로 입국 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⑥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을 포함)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수급 예정인 자.
 - ⑦ 「졸업 예정자」로 소정 기일까지 학력의 자격 및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
 - ⑧ 신청 시 이중국적자로 도입 전까지 일본국적을 이탈한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자.
 - ⑨ 일본 입국 후, 재류자격을 「유학」이외로 변경한 자.
 - ⑩ 신청 시부터 일본 이외에서의 연구활동(필드 워크, 인턴쉽 등)이나 휴학 등을 장기간 예정인 자.
- (9) 기타 : 일본 유학 중, 일본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는 인재로서, 널리 지역 학교와 지역의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자국과 일본과의 상호 이해에 공헌함과 동시에 졸업 후에도 유학한 대학과 긴밀한 연대를 가지고, 졸업 후 앙케이트 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귀국 후에는 재외공관 등이 실시하는 각 사업에 협력함으로써, 자국과 일본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를 채용한다.

6. 장학금 지급 기간

- (1) 예비교육을 받고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2020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5년간 (단, 의학, 치학, 수의학 또는 6년제 약학 전공자는 2027년 3월까지 7년간)
- (2) 직접배치에 의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기간은 4년간(의학, 치학, 수의학 또는 6년제 약학 전공자는 6년간)으로 하고 지급개시 시기는 수용 대학이 지정하는 입학 시기로부터 한다.
- (주1) 상기 (2)에 의해 입학시기가 대학에 따라 2020년 4월, 9월 또는 10월이 된다. 단,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월이 2020년 9월이 되는 경우는 수용대학의 학기가 2020년 9월 1일에 시작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학기가 2020년 9월2일부터 9월30일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월은 2020년 10월이 된다.
- (주2) 조기 졸업 또는 대학원으로 월반 입학학을 위해 학부를 퇴학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기간은 졸업 또는 퇴학 시점까지가 된다.
- (주3) 6년제 약학전공에 대해서는 실무 실습 전에 실시되는 「약학공용시험」을 수험하여, 실무실습에 필요한 일정 기준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게 된다.
- (3)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
학부의 수학을 종료한 후, 대학원 정규 과정(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전기)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히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에 의한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간의 연장 심사를 받고, 채용 될 경우 장학금 지급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7. 장학금 등

- (1) 장학금 : 월 117,000엔을 지급한다. 특정 지역에서 수학·연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 단위로 가산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해마다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대학 또는 예비교육기관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2) 교육비 : 대학의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검정료는 문부과학성이 부담한다.
- (3) 여비
- ① 입국 여비 : 문부과학성은, 상기 「5. (6) 출발 시기」에 기재된 소정의 기간 중에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에게 여행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국 내)으로부터 수용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이다. 또한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국내여비, 공항세, 공항 사용료, 여행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내의 여비(항공기환승 비용을

포함.) 여행 보험료, 휴대폰·별도수하물에 관련된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국적 국에 재외공관이 없어 비자 신청을 위해 제3국을 거쳐서 일본에 입국하는 자, 또는 국적 국에서 일본까지 직항편이 없는 자의 경우, 제3국내의 경비와 숙박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고, 국적 국에서 거치는 제3국까지의 항공권과 그 국가에서 수용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만을 문부과학성에서 교부한다.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판단, 일본 입국 전에 한국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일본 입국 전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를 「거주지」로 판단하여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에서의 항공권을 마련한다.

비자 신청을 위해 제3국에 거칠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사정에 의해 국적국 이외의 국가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항공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 사정으로 「5. (6) 출발시기」에 기재된 소정의 기간 외에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② 귀국 여비 :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상기 「6. 장학금지급기간」에 기재된 장학금 지급기간의 종료 월내에 귀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 본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수용 대학이 통상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에서 해당 유학생이 도착하는 장소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국 내)까지의 하급 항공권으로 한다. 귀국하는 유학생의 일본 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항공세, 공항사용료,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국적국 내에서의 여비(항공기 환승비용을 포함.), 여행보험료, 휴대폰·별도수하물에 관한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본인 사정 또는 하기 「8. 장학금 지급 정지 사항」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 월 전에 귀국할 경우 귀국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 (예: 일본에서의 진학, 취업), 일시 귀국하는 경우의 귀국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8. 장학금 지급 정지 사항

다음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까지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처분이 결정 되기 전까지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① 신청서류에 허위, 부정 사실 기재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 ②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서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 ③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여,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졌을 때.
- ④ 대학 또는 예비교육 기관에서 퇴학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혹은 제적되었을 때. (채용기관에서 학칙에 준하여 징계처분으로 퇴학, 정학, 훈고 및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경우 혹은 제적되었을 때.)
- ⑤ 대학 또는 예비교육기관에서의 학업 성적 불량이나 정학, 휴학 등에 의해 표준 수업 연한 내에 수료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 ⑥ 「유학」 재류자격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한 경우, 또는 「유학」 재류자격이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 되었을 때.
- ⑦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 특정된 것은 제외) 지급을 받았을 때.
- ⑧ 채용 후,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상위 과정으로 진학했을 때.

9. 선고

(1) 재외공관은 서류 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에 의해, 제1차 선고를 실시한다.

- ① 필기시험의 수험과목 (반드시 전원이 수험할 것)

선택한 계열	수험 과목
문과계 A, 문과계 B	일본어, 영어, 수학 A
이과계 A	일본어, 영어, 수학 B, 화학, 물리
이과계 B, 이과계 C	일본어, 영어, 수학 B, 화학, 생물

- ② 필기시험 시에는 계산기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2) 제1차 선고 결과 통지는 재외공관이 별도 지정한 일시로 하여, 채용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제1차 선고에 합격한 자가 반드시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채용되는 것은 아니다.

(3) 제1차 선고 합격자는 재외공관에서 문부과학성으로 추천된다. 문부과학성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선고를 행하여 채용자를 결정한다. 선고는 계열 분야별로 행한다.

(4) 최종 채용 여부 결과는 재외공관을 통해 대체로 2020년 1월중에 통지된다. 채용 여부의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배치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10. 신청 서류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국적국 내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한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No.	서류 종류	원본 1부	사본 1부	비고
①	신청서	○	○	2020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주4)
②	직접배치희망대학신청서	●	○	직접배치를 희망하는 지만 해당 2020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주5)
③	모든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 전체 성적증명서	○	○	출신학교 또는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것 (주6)
④	모든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증명서	○	○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수료)예정서 (주7)
⑤	최종 출신학교의 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서	○	○	양식은 자유. 샘플 있음 (주8)
⑥	건강진단서	○	○	2020년도 양식을 사용할 것
⑦	재학증명서	●	●	대학 등에 재학중인 지만 해당.
⑧	대학입학자격 등 인정시험 합격증명서	●	●	대학입학자격 등 인정시험 합격자만 제출 (주7, 9)
⑨	어학능력 증명서	○	● (2부)	일본어, 영어 관련 어학능력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사본 2부 제출. 원본은 필요 없음 (주10)

(주1) ○표 서류는 제출 필수이고, ●표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할 것.

(주2) 모든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주3) 모든 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부로 각각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할 것. 또한, 모든 서류의 첫페이지 우측 상단에 반드시 ①~⑨까지의 신청서류 번호(상기 표의 No. 참조)를 기재할 것.

(주4) 신청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선명한 화질로 사진 전용지에 인화한 것으로 크기는 3.5×4.5cm 상반신, 정면, 탈모할 것. 또한 사진의 뒷면에는 국적과 성명을 기입할 것. 신청서 데이터에 가공하지 않은 여권용 원본 사진 데이터를 첨부하여, 선명한 화질의 컬러로 인쇄한 것은 가능하다.

(주5) 직접배치 희망자는 재외공관이 제공하는 직접배치 가능 대학 목록에서 원하는 대학·학부·학과를 선택하여 기입할 것. 신청 시 희망자는 재외공관에 조회하여, 직접배치 가능 대학·학부·학과, 수용 가능 인원, 일본어 등의 요건,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 시험 실시 여부, 유학 개시시기 등을 미리 확인한다.

(주6) 신청자의 최종학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할 것.

(a)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b)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 고등학교 및 대학 모두의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에는 학년별 취득한 전과목의 성적을 알 수 있고, 그 성적이 몇 단계로 평가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재학생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입학 시부터 신청 시까지 판명되는 학기 전체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채용 전까지 해당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미제출 기간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신속히 추가 제출할 것. 최종 출신 학교가 중고 또는, 초·중고등학교 일괄교의 경우, 고등학교(후기중등교육)에 대응하는 전 학년의 학업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주7) 신청자의 최종학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할 것.

(a) 고등학교 재학생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b) 고등학교 졸업생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c) 대학교 재학생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⑦ 재학증명서

(d) 대학교 졸업생 - 고등학교 및 대학 모두의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에는 대학입학자격 등 인정시험 합격증명서 및 졸업증서, 합격증서 사본도 대체 가능하다(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원본은 제출하지 말 것.) 단, 이 경우 해당 출신대학, 시험시행기관 등의 책임자의 확인증명을 첨부할 것. 채용 전까지 해당 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를 조속히 추가 제출할 것.

(주8) 추천서의 발행인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의 경우 해당학교 또는 대학으로 하고, 재학중인 자는 재학중인 학교 또는 대학으로 한다.

(주9) 대학입학자격 등 인정시험 합격자가 신청할 경우, 대학입학자격 등 인정시험 합격증명서를 제출하면 ③ 성적증명서, ④ 졸업증명서, ⑤ 추천서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하다.

(주10)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인쇄하는 경우, 신청자의 이름 및 해당 자격 내용(레벨, 점수 등)을 포함한 페이지를 인쇄하여 제출할 것.

11. 주의사항

- (1) 일본으로 입국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일본과 모국과의 법 제도의 차이, 학교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입국 후 장학금을 수령하는데 까지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정도 필요하므로, 생활 자금으로서 대략 필요로 하는 비용을 최저 미화 2,000달러 정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장학금은 일본 입국 후, 각자가 개설한 일본 우체국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본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한 장학금 송금은 하지 않는다.
- (4) 일본 입국 후 본인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5) 숙소에 대하여
 - ① 예비교육 기간 중 숙소

유학생이 재적하는 도쿄외국어대학 또는 오사카대학의 숙소에 입거할 수 있다. 숙소에 관한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대학의 유학생 숙소

유학생을 위한 전용숙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을 진학하는 자는 희망할 경우, 소정의 조건하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입실 수에 제한이 있어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숙소에 관한 제반 비용은 본인부담이다.

③ 민간 숙소 등

상기의 숙소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일반 학생 기숙사나, 민간의 숙소에 본인 부담으로 입주하게 된다. 또한, 부양 가족(배우자나 자녀)을 동반하는 경우, 가족용 숙소의 확보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채용자가 일본 입국 후, 숙소를 확보한 다음에 동반 가족 등을 불러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채용 된 경우, 채용에 관한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배치 대학, 연구과 학부, 전공분야, 재적 기간, 수료 후의 진로, 연락처 (주소, 전화 번호, E-mail 주소))를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유학생 사업 (유학 중의 지원, 유학 종료자의 팔로우업, 유학생 제도 개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계 행정 기관과 공유한다.

또한 채용자에 관한 정보(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제외)는 일본정부가 작성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촉진을 위한 홍보자료 등에서, 특히,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귀국 국비외국인 유학생을 소개 하기 위해 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 채용될 때, 일본정부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의 준수 사항을 정리한 서약서 제출 및 본 취급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 (7) 모집요강, 신청서류에 병기된 영문은 평의상 붙여 넣은 것이고, 영문에 의한 표현이 일본어 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 (8) 이 모집요강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그 외에 의문이 있다면 재외공관에 문의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
- (9) 이 모집요강에 정해진 것 이외에 국비외국인유학생 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일본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주의 : 대한민국 응모자의 경우 반드시 **[별지 1] 학부유학생(2020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장학금) 대한민국 응모 절차 및 선고 방법에 대한 안내를 참조하여 신청할 것.